



■ 7월 육계분과위원회 내용

- 자조금거출향상을 위한 논의
 - 계열사의 협조가 상당한 부정적인 가운데 계열사중 3~4개소가 적극 협조중
 - 각 시군 행정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
 - 자조금사업을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미참여농가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
- 가금분야 연구회 결성
 - 정부와 기관 및 단체가 아우러져 육계분야의 전반적인 사항과 더 나아가 정책제안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

■ 육계자조금 거출향상을 위한 설명회 실적 및 계획

일시	지역	장소
7월 6일(월)	남원	남원지부 사무실
7월 14일(화)	정읍	정읍지부 사무실
7월중	무안	무안지부 사무실

- 계열사의 자조금납부 동의서와 상관없이 농가가 직접 자조금사무국으로 자조금 납부 가능함
 - 육계자조금 거출 계좌번호: 301-0017-6070-01(농협중앙회)
 - 예금주: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

■ 계열화사업 관련 의견제시(한국축산경제연구원)

- 수급위사업인 “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”에서 제일 선행되는 과제로 육계계열화 용어와 유통협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
- 1. 계열화의 용어, 정의에 관한의견
 - 계열화를 정의하려면 연계되는 분야를 먼저 정의하여야 함
 -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열화 용어 및 정의를 구분하는 것에 반대함
- 2. 유통협약에 관한의견
 - 축산법은 생산단계의 법이므로 유통협약은 유통부분에 관련된 법률이므로 농안법에 적용시켜야 함
 - 육계에서는 종계사육수수 조절, 실용계입란 조절, 그리고 병아리 입식조절의 3가지 방법만으로 가능
 - 육계부분에서 유통협약을 축산법에 신설하는것에 대해 반대함
 - 농안법(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)의 중복성과 축산에는 적용하기 어려움

■ 향후 일정 및 공지사항

- 8월 육계분과위원회 쉽니다.
- 9월 육계분과위원회는 대전국제축산박람회장에서 개최키로 함